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수수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신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신설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수수료의 면제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에 의하여 사하구 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. 등록 하는 제증명 등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 의 학술,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한 때</p> <p>2.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 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을 받아 청구한 때</p> <p>3.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 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때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